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2024. 4.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제안일자 : 2024. 4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제안이유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(2024. 6. 4. ~ 6. 12.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복지동행국, 도시환경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 등으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(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)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12.31.) 제41조~제53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2024. 6. 4.(화) ~ 6. 12.(수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복지동행국, 도시환경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 원 회	위원장 및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	복지동행국	복지도시 위원회실	장홍용	이지예
		마포복지재단			
		도시환경국		신준호	박철호
		보 건 소			
		동 주민센터	동 주민센터	장홍용	이지예

5. 감사일정

일 정	감 사 대 상	비 고
2024. 6. 4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- 서강동 주민센터 - 대흥동 주민센터 	
2024. 6. 5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복지정책과 - 장애인사회보장과 	
2024. 6. 7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어르신동행과 - 가족행복지원과 - 아동보육과 	
2024. 6. 10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- 주택상생과 - 깨끗한마포과 - 자원순환과 	
2024. 6. 11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- 도시계획과 - 건축지원과 - 맑은환경과 - 공원녹지과 	
2024. 6. 12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- 보건행정과 - 위생과 - 건강동행과 - 의약과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복지동행국과 도시환경국 및 보건소 각 과, 동 주민센터, 마포 복지재단 별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피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업무 보고·청취
- 바. 질의 및 답변(필요 시 현지 확인, 증언 청취 등)
- 사. 감사종료 선언

8. 유의사항

- 가.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.
- 나.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다.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9. 감사결과 보고

가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- ①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
- ② 감사실시 경과
- ③ 주요 감사실시 내용
- ④ 감사결과 처리의견(시정·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 등)
- ⑤ 기타사항

나. 감사결과 보고서 위원회에 보고 후 의결로 채택

다. 본회의 의결로 승인

10. 행정사항

가.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작성 시행한다.

나.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반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

다. 본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,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(증인) 등 출석요구서

마포구청장,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귀하

마포구의회가 2024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, 증인 등 관계인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

□ 서류제출 요구 : 요구서류 목록 수합하여 제출기한 지정 별도통보

□ 증인 등 출석요구

1. 출석일시 :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정일시

2. 출석장소 :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

3. 출석대상

가. 복지동행국: 복지동행국장, 복지정책과장, 장애인사회보장과장, 어르신동행과장, 가족행복지원과장, 아동보육과장

나. 도시환경국: 도시환경국장, 주택상생과장, 깨끗한마포과장, 자원순환과장, 도시계획과장, 건축지원과장, 맑은환경과장, 공원녹지과장

다. 보건소: 보건소장, 보건행정과장, 위생과장, 건강동행과장, 의약과장

라. 동주민센터: 감사대상으로 지정되는 동주민센터의 동장 (대흥동, 서강동)

마. 마포복지재단: 이사장, 사무국장

※ 기타 해당 기관·부서별 팀장 및 해당 직원 등 포함. 끝.

2024년 4월 일

복 지 도 시 위 원 장

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

(복지도시위원회)

연번	요 구 자 료	요구의원	소 관 과